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5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운용역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2.08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생략) 나.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생략, 현행과 동일) 나.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08일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운용역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홍성수 <주석 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오현정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UBS퇴직연금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40%이내에서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 주식모투자신탁, First Class 연금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신탁재산의 40% 미만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UBS퇴직연금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퇴직연금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모투자신탁, First Class연금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UBS퇴직연금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4.83%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49%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40%이내에서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 주식모투자신탁, First Class연금증권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장기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40%이내에서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주식모투자신탁, First Class연금증권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생략)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생략)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의 40% 미만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생략, 현행과 동일)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생략, 이하 현행과 동일)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퇴직연금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 홍성수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석추가>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3.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 오현정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1)비교지수: (KOSPI*40%)+(KIS종합채권지수 중국채 + 특수채 + 통안채지수)*6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4.83%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49%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변경전 : 하나UBS 금융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변경후 : 하나UBS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펀드명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운용역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2.08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금융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하나UBS 금융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First Class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First Class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금융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08일 - 펀드명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운용역 변경(나성욱 → 오현정)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성욱 <주석 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오현정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하나UBS금융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하나UBS금융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하나UBS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대상]** <삭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하나UBS금융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투자목적 : (생략) 채권에 50%이하, (생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삭제>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투자목적 : (생략, 현행과 동일) 채권에 40%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UBS 금융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주식]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 금융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주식] (3) 비교지수 : (KRX Financial Index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지분증권(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특히, 금융주에 투자하므로 (KRX Financial Index x 100%)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종목 10% 투자한도 등 법률적 제약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및 투자비중에 따라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수는 단순한 수익률 비교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3) 비교지수 : KOSPI 100%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해 KOSPI 100%를 비교지수로 사용합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UBS 금융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주식]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삭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1) 비교지수: (KRX Financial Index x 100%)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1) 비교지수 : KOSPI 10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RX Financial Index x 10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금융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2) 투자대상** 하나UBS금융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3) 비교지수** : (KRX Financial Index x 100%)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지분증권(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특히,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2) 투자대상** <삭제> **(3) 비교지수** : KOSPI 100% ※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금융주에 투자하므로 (KRX Financial Index x 100%)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종목 10% 투자한도 등 법률적 제약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및 투자비중에 따라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수는 단순한 수익률 비교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3. 운용전문인력 :** 나성욱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1) 비교지수 : (KRX Financial Index x 100%)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운용전문인력 :** 오현정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1)비교지수 : KOSPI 10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2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RX Financial Index x 10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연금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2월 8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7년 2월 8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한다. (신설)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2월 8일 -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대상**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대상** 2.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8.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7년 2월 8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신설)	**나. 과세**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자투자신탁명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2월 8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9. 하나UBS금융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현행과 동일) 9. 하나UBS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

[변경등록신청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2월 8일 자투자신탁명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구조 하나UBS금융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구조 하나UBS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삭제>

	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